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

2026



장안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 2. 활용 ----- 2

II. 안전관리 업무분장 및 재난대응체계

- 1. 안전관리 업무분장 ----- 3
- 2. 재난대응체계 ----- 4
- 3. 비상연락망 ----- 5

III. 재난유형별 관리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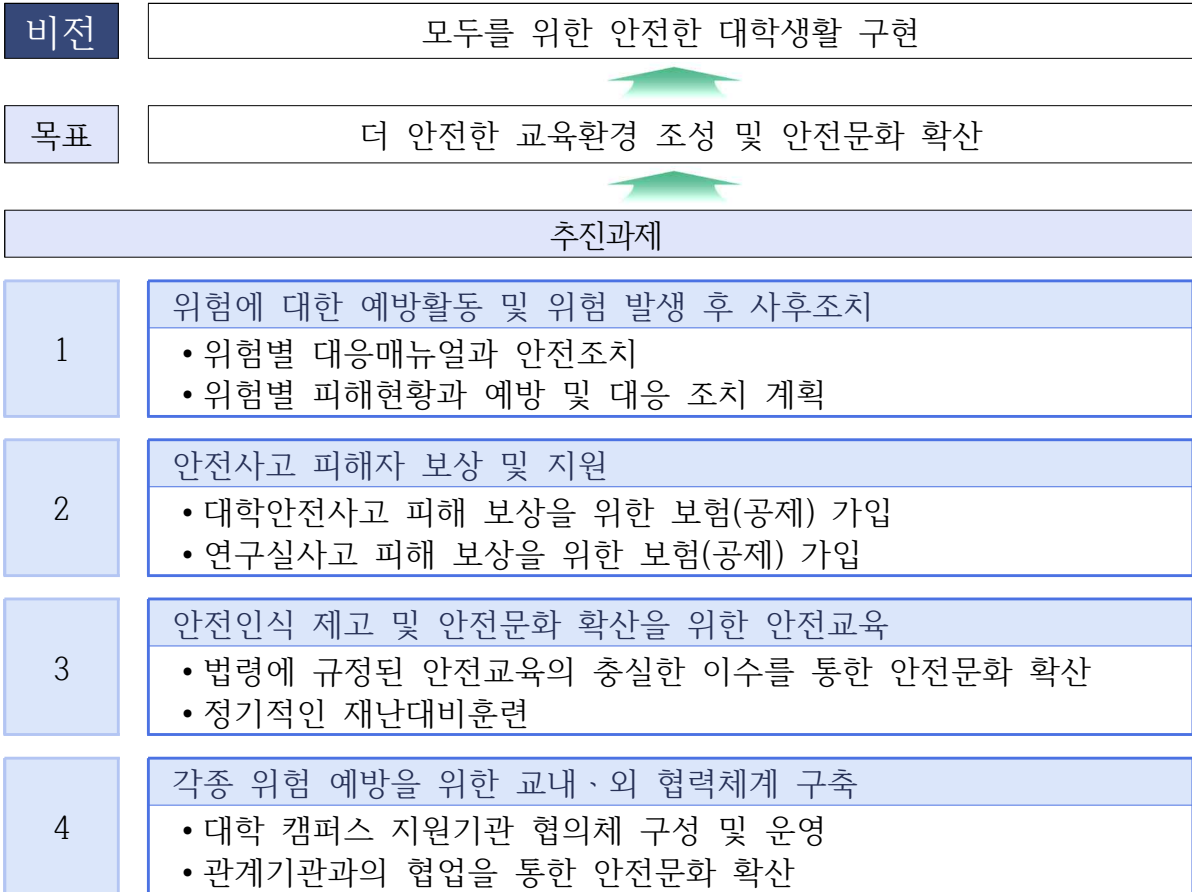
- 1. 화재 사고 ----- 6
- 2. 정전 ----- 11
- 3. 가스 안전사고 ----- 13
- 4.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 14
- 5. 건축물 안전사고 ----- 16
- 6. 연구실 안전사고 ----- 18
- 7. 지진 ----- 22
- 8. 자연재해 ----- 24
- 9. 황사/미세먼지 ----- 26
- 10. 폭염 ----- 28
- 11. 식중독 ----- 29
- 12. 감염병 ----- 31
- 13. 성폭력 ----- 35
- 14. 폭행사건 ----- 36
- 15.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37
- 16. 학생행사 ----- 38
- 17. 사이버 안전사고 ----- 40
- 18. 국가비상사태 ----- 42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활용

- 주관부서의 지속적인 재난관리체계 유지
- 재난 상황별 대응 교육(훈련)
- 재난 시 즉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 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 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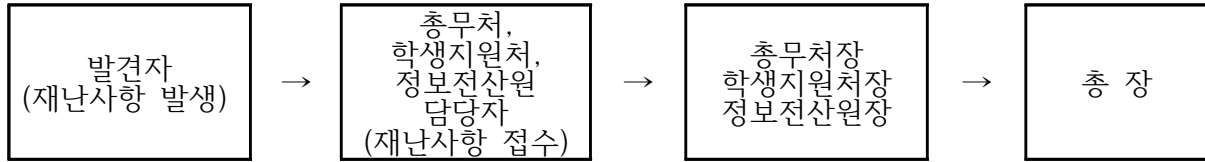
II. 안전관리 업무분장 및 재난 대응체계

1. 안전관리업무 분장

재난유형	업무내용	주관부서	비 고
재난관리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고발생시 안전관리 총괄 ■ 종합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공지 ■ 재난대응 훈련 계획 및 주관 	총무처	총무팀 관리팀
시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분야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물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 정전 - 가스 - 엘리베이터 - 건축물 ■ 재난시 대응체계 가동 	총무처	관리팀
연구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연구실 안전 점검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 연구실 안전교육 ■ 재난시 대응체계 가동 	총무처	관리팀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 태풍/호우/낙뢰/대설/한파 - 황사/미세먼지 - 폭염 ■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 ■ 자연재해 안전교육 ■ 재난시 대응체계 가동 	총무처 학생지원처	관리팀 총무팀 건강관리실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 감염병 ■ 생활안전 환경 개선 ■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가동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
학생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 폭행사고 - 학생 행사 ■ 학생안전 환경 개선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가동 	학생지원처 교무처	교무팀 학생지원팀 인권성평등센터
사이버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사이버 안전사고 대비 점검 ■ 사이버 안전교육 ■ 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가동 	총무처 정보전산원	총무팀 정보전산원
국가비상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및 대테러 계획 수립 ■ 민방위 훈련 ■ 재난대응 인력동원 	총무처	총무팀

2. 재난대응체계

가. 재난 시 보고체계



나. 주관부서 담당자

재난유형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화재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74
정전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74
가스안전사고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69
엘리베이터 사고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69
건축물 안전사고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74
연구실 안전사고	총무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299-3369
지진	총무처	관리팀 담당 총무팀 담당	299-3374 299-3370
자연재해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74
황사/미세먼지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	299-3499
폭염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	299-3499
식중독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	299-3499
감염병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	299-3499
성폭력	학생지원처	인권성평등센터	299-3340 299-3520
폭행사고	학생지원처	인권성평등센터 학생상담센터	299-3520 299-3338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학생지원처 교무처	학생지원팀 담당 교무팀 담당 국제교류원 담당	299-3315 299-3323 299-3511
학생 행사	학생지원처 교무처	교무팀 담당 학생지원팀 담당 장애학생지원담당	299-3323 299-3315 299-3315
사이버 안전사고	정보전산원 총무처	정보전산원 담당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299-3388 299-3366
국가 비상사태	총무처	총무팀 담당	299-3370

III. 재난 유형별 관리 매뉴얼

1. 화재사고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 소방안전관리자(299-3374)

나. 사전 대책

1)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 운영 :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 매분기 1회 이상 소집

2)소방 안전교육

- 교직원 대상 : 년 1회 실시
- 학생 대상 : 년 1회 실시

3)자위소방대 훈련

- 년 1회 소집(자위소방대 편성 조정 및 상황에 따른 비상연락망 확보)
-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른 임무 숙지
- 화재발생 시 대응 훈련

4)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 소방시설 매년 2회 전문업체 정밀점검
- 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기/소화전 분기 1회 자체점검
- 피난/대피시설 분기 1회 자체점검

5)구성원 기본 이행사항 숙지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소화기/소화전/화재경보 비상벨 위치
-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위치
- 화재 시 신고 전화번호 및 신고요령
- 화재예방활동 및 피난통로 불법 적치물 이동
- 실험실 안전수칙
- 불법 전열기구 사용 불가

다. 화재 발생 시 대응

- 1) 보고체계 매뉴얼에 따라 보고
- 2) 화재 상황 전파
- 3) 자위소방대 소집 및 투입

라. 사후 대책

- 1) 원인조사
 - 관할 소방서/경찰서 합동조사
 - 소방대책위원회 소집
- 2) 사고보고
 - 재난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3) 화재복구
 - 총무처에서 주관하여 복구하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시행
- 4) 화재보험 청구
 - 총무처(299-3374), 한화손해보험

마. 자위소방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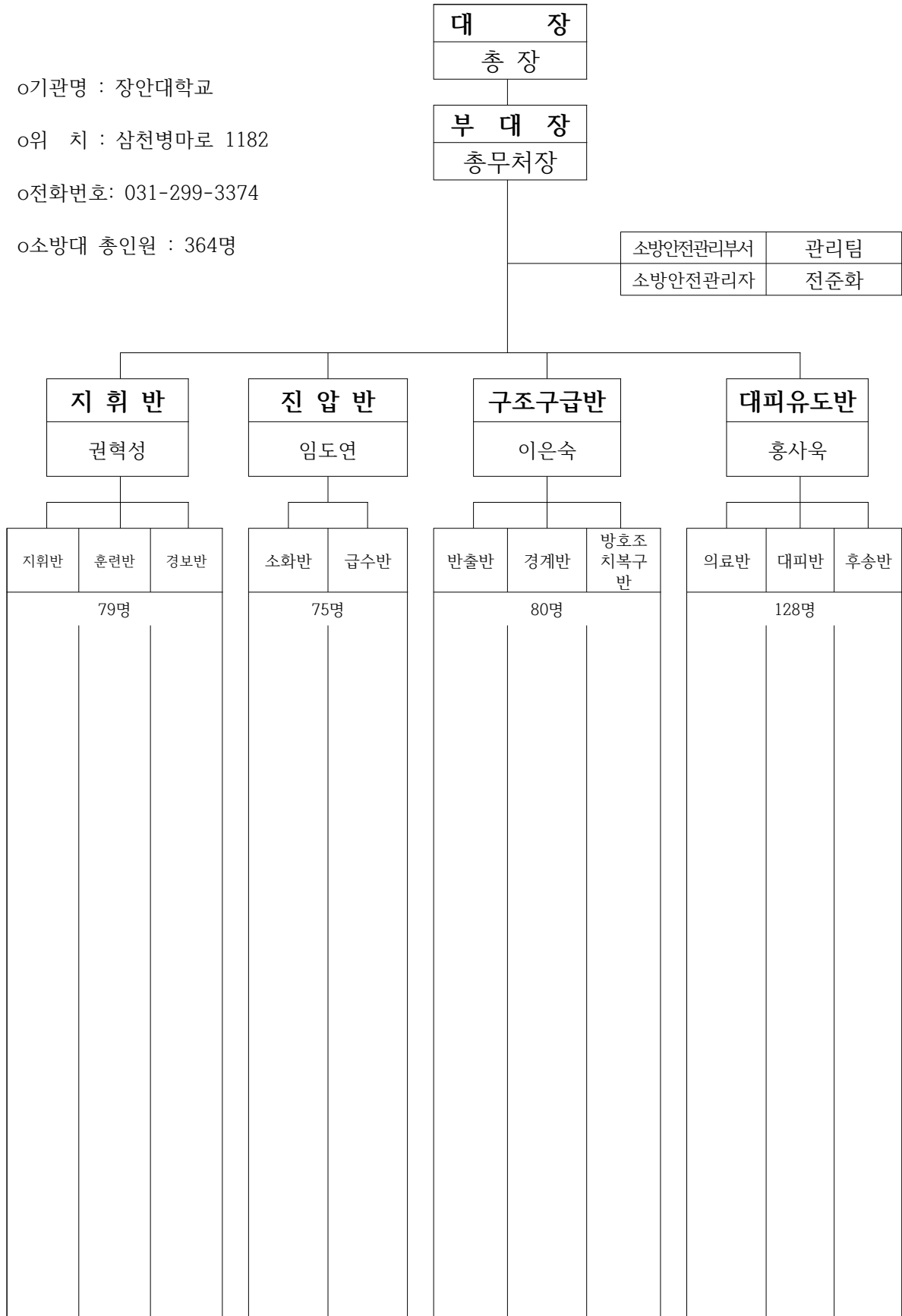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표

○기관명 : 장안대학교

○위 치 : 삼천병마로 1182

○전화번호: 031-299-3374

○소방대 총인원 : 364명



자위소방대 임무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운용한다.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지 휘 반	대장(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 련 반	년간 및 월간 소방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경 보 반	소방서(119) 및 구내전화(3400, 3374) 신고
진압반	소 화 반	자체 소방 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 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구조구급반	반 출 반	인명검색, 구조,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 계 반	비상화재경계, 반출물건의 경계, 출입인원의 통제, 관할소방대 유도
	방호조치 및 복구반	방화문 폐쇄, 기타문의 개방, 위험물 등의 소화 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대피유도반	의 료 반	질식, 중. 경상자의 응급조치
	대 피 반	상황발생시 대피 유도, 민방위 업무 및 대외 홍보
	후 송 반	사망자 조치 및 질식, 중.경상자를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

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1) 초기화재 행동요령

-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119와 총무처에 신고한다.
- 가까운 장소의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화재전파를 한다.

2) 신고요령

- 119로 전화하여 불이 난 장소의 주소, 건물명, 층수 또는 호실명,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소방서에서 최종 접수가 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3) 대피요령

- 비상구 및 계단을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긴급대피를 할 경우에는 피난구(문) 또는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연기나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수건 등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가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 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의 통로가 되어 굴뚝 역할을 하여 위험하므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4)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화재지점 가까운 곳의 바닥으로 옮긴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링 또는 타이)을 뽑습니다. 소화기를 든 상태에서는 손잡이가 안전핀을 눌러 안전핀이 빠지지 않는다.
- 소화기를 든 후 다른 손으로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하도록 한다.
- 손잡이의 상하 레버를 힘껏 움켜 쥐 빗자루로 쓸 듯이 좌우로 분사한다.
- 2인 이상이 1개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 소화전 발신기 버튼을 누른다.
- 소화전함을 열어 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지점 가까이 이동한다.
- 한 사람은 노즐 부분을 단단히 잡고 자세를 낮추어 화점을 향하도록 한다.
-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노즐 부분을 잡은 사람을 돕는다.
- 진화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근다.

2. 정전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 담당 (299-3374)

나. 사전대책

1) 정전관련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자체 점검 및 년 1회 전문 점검업체 정밀점검
- 고압 전기시설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영에 의한 점검
- 저압 전기시설 안전 점검
- 비상발전기 운전상태 점검
- 정전대비 전력수급단계 확인

2) 구성원 기본 이행사항 숙지

- 정전 시 사고대책요령
- 정전 시 비상연락망(총무처 관리팀, 위탁관리 사무실, 정문경비실)
-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위치
- 전력수급 비상시 행동요령(여름철/겨울철)

3) 예고 정전인 경우 각 건물 사용자 안내 및 필요 조치 이행

- 총무처 관리팀
 - 중요부서 및 정전 건물의 해당부서 안내문서 발송
 - 해당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안내문 게재
- 시설관리(위탁)
 - 각 건물의 변전실내 안전장비 배치 확인 및 엘리베이터 통제
- 실험실 관리부서
 - 각 실험실별 안내 및 조치

다. 사후대책(불시 및 대규모 정전)

1) 사고보고: 재난대응 보고 체계에 따라 실시

- 총무처/관리팀
 - 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총괄보고
 - 정전/복전 상황 안내문자 전 구성원 발송
- 시설관리(위탁)
 - 정전범위 각 건물의 전기시설물 현장 확인 및 보고

2) 정전복구

가) 외부정전

- 한국전력 화성지점 정전에 대한 범위, 정전 발생 원인 파악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 교내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후 정전복구

나) 내부정전

- 총무처 관리팀/시설관리(위탁)/유관부서 협의 후 정전복구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교내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후 정전복구
- 교내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후 정전복구

라. 정전 시 행동요령

1) 예고 정전

- 예고정전일 경우 예고정전에 대한 안내가 공지됩니다. 일정 및 정전 범위를 항상 숙지하여 대처한다.
- 정전이 되면 각 사무실의 전기시설물(컴퓨터, 프린터기 등),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필요한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뽑아놓거나 스위치를 꺼야 한다.
- 정전이 예고된 경우에는 정전기간 동안 전기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으며, 특히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불시정전 소규모(단시간) 및 대규모(장시간) 정전

- 정전을 인지하였을 경우 강의실 및 실험실 또는 사무실 주변상황을 파악하며 인지 못한 구성원에 대하여 정전 상황을 전파한다.
- 전기제품의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 정전 시 총무처 관리팀(299-3376), 총무처장(299-3313)로 신고한다.
- 대규모(장시간)정전 시에는 가급적 건물 밖으로 나와 복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정전 시에는 총무처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며, 임의로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경우 당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비상 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 요청한다.
- 비상전력이 공급되는 건물의 실험실이나 사무실에서는 비상전원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전원공급이 안될 경우 총무처 관리팀으로(299-3376) 신고한다.

3)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생 시 행동요령

- 긴급하지 않은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 안전보안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제외한 실내외 조명은 모두 소등한다.
- 여름철 절전요령
 -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한다.
 - 사용하지 않은 전기제품 또는 사무용품의 플러그는 뽑는다.
 - 실내온도는 26°C를 유지한다.
 -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한다.
 -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는 전체 일괄 소등하고 필요한 곳은 부분 점등한다.

○ 겨울철 절전요령

- 겨울철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시~19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 한다.
-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 20°C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는다.
- 개인용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등의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한다.
-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는 조명을 일괄 소등하되 필요한 부분만 점등한다.

3. 가스 안전사고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 담당(299-3369)
- 119 신고

나. 사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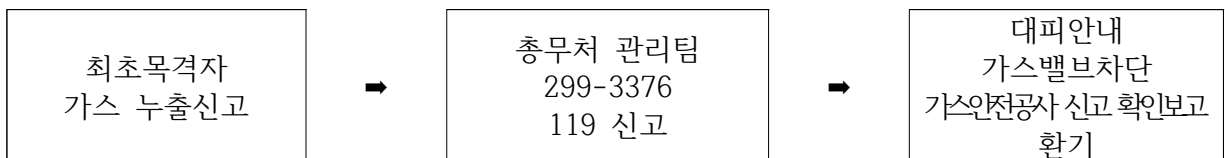
1) 정기점검

- 고압가스 정기점검 : 년1회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 정압기 및 도시가스 정기점검: 년1회 정압기 및 도시가스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 정압기 분해점검 4년 1회(전문업체)

2) 자체점검:

- 월1회 가스시설물 총무처 관리팀 자체점검
 - 배관이나 호스, 밸브 등의 연결부위를 누출 검지거나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 검사
 -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와 연결된 배관 또는 호스에 설치된 중간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정상작동하는지 테스트
 - 배관이 노후로 인해 녹슬었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확인

다. 재난 시 대응



- 1) 보고체계 따라 보고 및 신고(삼천리도시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
- 2) 누설 상황 전파
- 3) 가스밸브 차단

라. 사후대책

- 1) 원인조사
 - 삼천리도시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조사
 - 자체 조사

- 2) 사고보고: 재난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3) 복구작업: 총무처 관리팀에서 자체 보수 또는 외부 전문업체 복구작업
- 4) 보험청구: 피해사항발생시(물적/인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청구

마. 가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1) 가스 누출사고

- 차단밸브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 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고임에 따라 누출된 가스는 불씨 및 전기기구 등의 스위치 조작에 의한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며, 빗자루나 방석 등으로 쓸어 밖으로 내 보낸다.
- 가스계량기 차단밸브나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공급업자나 총무처 관리팀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는다.
- LPG나 도시가스를 흡입한 경우 산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 LPG에 의한 동상발생 시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한다.
- 화상을 입은 경우 냉수 등으로 충분히 식힌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한다.

2) 가스 안전사용

- 가스를 사용하기 전 연소기 주변 등 실내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환기를 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
- 연소기 부분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콧,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여주고, 낡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항상 콧, 중간밸브를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가스누출 검사를 실시한다.

4.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 담당(299-3369)
- 우일엘리베이터(031-293-6611)

나. 사전대책

1) 엘리베이터 점검 및 유지관리

- 승강기안전관리원 년 1회 정기 검사 및 정밀 검사 시행
- 전문 점검업체 매월 정기점검
- 비상통화장치 매월 정기점검
- 비상 조명 및 일반조명 점등 상태 매월 점검

○엘리베이터 고장 시 고장 수리 일지 작성

2) 구성원 기본 이행사항 숙지

○엘리베이터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초기대응 요령

다. 엘리베이터 비상시 초기대응

1) 비상 통화 장치와 유선으로 신고하여 통화를 하였어도 최초 신고 전화를 받은 관리자는 무조건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 대응한다.

2) 인명구조 시 무리한 구조는 피하며 구조가 어려울 경우 전문 점검업체가 도착할 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승객과 대화를 계속 유지하여 안정시켜야 한다.

3) 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운행은 무조건 정지시켜야 하며 전문 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운행해서는 안 된다.

라. 사후대책

1) 원인조사

○전문 점검업체

2) 사고보고

○재난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3) 정상운행

○전문 점검업체 협의 시행

마. 엘리베이터 고장 시 행동요령

1) 엘리베이터 고장 시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 시 건물명과 층, 엘리베이터 ID를 알려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외부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층 표시 화면에 '점검중'이라고 표시되는 경우, 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오래 정차 되어 있는 경우, 층 표시 화면에 아무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층무처 관리팀으로 신고한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을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눌러 신고한다. 만일 정상적으로 교내 비상 연락망과 점검업체에 신고가 안될 경우 층무처 관리팀 담당자(299-3376), 119에 신고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소음, 진동, 도어 닫힘 불량, 버튼 동작 불량, 기타 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층무처 관리팀(299-3376)으로 신고한다.

2) 엘리베이터 비상상황 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눌러 자신이 어느 건물, 어느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지 알려야 한다. 비상통화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다.

○갇혀 있는 경우 자칫 마음대로 판단하여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하므로 구출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후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럴 때 일수록 좀 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3) 엘리베이터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조작반의 비상통화 장치 등을 함부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도어개폐기 출입문에 기대면 손이나 옷자락이 딸려 들어가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비상통화장치로 구조를 요청하고, 전문업체, 119구조대 등의 구조를 받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5. 건축물 안전사고

가. 주관부서 / 담당자

○총무처 관리팀 담당(299-3374)

○119 신고

나. 사전 대책

1) 건축물 정기점검

○수시 점검(균열, 침하)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특별 점검

○수시 점검 시 이상 유무 과다 발생 시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점검 실시

2) 건축물 관리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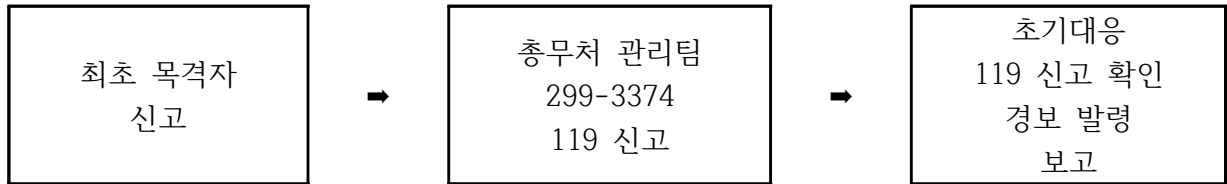
○년 1회 건축물 붕괴 관련 교육

3) 건축물 유지관리

○수시 점검 시 균열, 침하 발생부위 보수

○전문기관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 컨설팅

다. 재난 시 대응



라. 사후대책

- 1) 원인조사: 관할소방서/경찰서/전문기관 합동조사
- 2) 사고보고: 재난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3) 재난복구: 총무처
- 4) 재난보험 청구 : 총무처와 협의 시행

마. 붕괴 발생 시 행동요령

- 1) 붕괴 징조 포착 방법
 -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 깨지듯이 날 때
 - 동물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불안할 때
- 2) 붕괴 시 건물 내부에 있을 때
 - 건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한다.
 -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둔다
- 3) 붕괴 시 건물 외부에 있을 때
 -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공터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건물의 붕괴가 발생하면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는다.
 - 붕괴지역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 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4) 잔해에 깔렸을 때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구조를 요청한다.
 -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휴대전화로 학교 총무처 관리팀, 경비실 및 119에 신고한다.
 - 가능한 혈액순환이 잘되게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준다.
 -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사고

-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연구실안전관리 담당 (299-3369)

나. 사전 대책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가) 신규교육

- 교육대상 : 신규 입학 또는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 교육형태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2) 정기교육

- 교육대상 :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 교육시간 : 반기별 3/6시간 이상
- 교육형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3) 연구실 안전점검

-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 실시
- 대행업체를 통한 년 1회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4) 연구실 안전공제 가입

- 가입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 가입기간 : 매년 3월 1년 단위로 갱신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1급)-2억원, 요양-1억원

다. 실험실 사고대응 및 업무수행 체계도

진행 단계	수행업무	수행담당
연구실 사고 발생		
↓		
사고보고	✓ 최초발견자 (연구실책임자) → 안전담당부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주체의장	연구실 책임자
↓		
사고대응	✓ 필요 시 연구실사고대책본부 구성 ✓ 사고피해 확대 방지 조치 ✓ 연구실책임자에 의한 응급조치	연구실 책임자
↓		
사고조사	✓ 사고원인 규명 및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인	해당 부서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방지 대책 수립 후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 시행 ✓ 해당부서 보상관련 규정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책임자 해당 부서
↓		
사후관리	✓ 재발방지 대책시행 여부 확인 및 사고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책임자

라. 사고보고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발견자는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고 발생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119, 병원 등)에 협조 요청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일반 연구실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

마. 사후 대책

1) 사고조사

-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총장은 즉시 현장사고조사반 구성하여 현장상황 파악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손실되기 전(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 의뢰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 사고발생 일시,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조치현황,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2)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시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

3) 사후관리

○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연구활동 중지명령

○ 매년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

바. 사고유형별 행동요령

1) 화학분야 사고 행동요령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담당부서(총무처 관리팀 299-3369)에 상황 신고

○ 화학물질에 노출·접촉 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15~20분 이상 세척 (금수성 물질이나 인 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 초기진화를 실시하고,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화학분야 사고 예방법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 폐액은 종류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고, 폐액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 폐액처리 및 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2) 가스분야 사고 행동요령

○ 가스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전파 및 건물 내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 독성가스 누출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밸브차단 및 환기 등 조치

○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

○ 누출 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 가스분야 사고 예방법

○ 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옥외저장소에, 독성 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캐비닛 내 설치

○ 가연성가스검지기 설치 및 관리

○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3) 전기분야 사고 행동요령

-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감전 사고에 대비, 절연장갑 착용)
- 감전사고의 경우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물 분사금지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 등)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119, 병원 등)에 신고

※ 전기 분야 사고 예방법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 전기관련 실험 시 안전거리 확보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및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달려있는 제품 사용

4) 생물분야 사고 행동요령

- 병원체 유출사고 시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여 멸균봉투에 넣고 소독제 등으로 오염 부위 소독
- 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건강관리실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119 신고
- 병원체 유출사고 시 흡수제로 오염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 후 퇴실
- 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표시를 하여 2차 유출 확대 방지
-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사고 시 팬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 생물안전작업대 내 유출사고 시 생물유출사고대응도구 내에서 새 장갑과 1회용 보호구를 착용 후 탈오염작업을 실시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사용한 물질 폐기
- 동물에 물리거나 바늘 등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염수나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시 지혈
- 생물안전관리자, 동물실험실관리자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를 받음

※ 생물분야 사고 예방법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는다
- 연구실 별 생물사고대응도구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를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하여 실험

7. 지진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299-3374)
- 총무처 총무팀(299-3370)

나. 사전 대책

1) 지진관련 교육

- 년 1회 지진 관련 교육

2) 시설물 점검/유지관리

- 건물이나 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수리
- 건물 균열 발생 시 보수 및 보강

3) 구성원 기본 이행사항 숙지

- 공간 안에서의 안전 확보
- 떨어지기 쉬운 물건 고정
-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 및 사용방법
- 가스, 전기 차단방법
-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장소 파악

* 비상용품

- 비상약품(밴드, 연고, 붕대 등)
- 정수약, 생수, 비상식량(초코바, 시리얼 등), 라디오, 건전지, 라이터, 손전등(LED)
- 접이용 칼, 담요 및 수건, 위생팩, 우의 등

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 초기 대응요령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다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책상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2) 대피요령

- 밖으로 나갈 때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한다.
-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을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넓은 공간(운동장, 옥외주차장)으로 대피한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한다.

※ 대피 시 주의 사항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안내에 따라 대피한다.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침착하게 대피한다.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한 후대피한다.
- 지하층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딤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외부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한다.

3) 대피 후 행동

-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주변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의 사용이 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 사무실/강의실/실험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한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 행동요령에 따른다.
 -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체크한다.
 -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한다.
-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사용한다.
-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수도관의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가 확인되면 총무처에 신고한다.

8. 자연재해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관리팀(299-3374)

나. 자연재해의 종류

- 태풍, 호우, 낙뢰, 대설, 한파

다. 사전대책

1) 시설물 사전 점검

- 건물옥상, 건물주변, 외곽 배수로 점검 및 청소
- 건물옥상 시설물, 장비 점검 및 고정 작업
- 각 건물 창호 및 출입문 잠금장치 점검 및 보수
- 노후 및 불안정한 설치물 점검 및 보수
-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준비
- 대설대비 염화칼슘, 모래함, 제설장비 준비
- 낙뢰 대비 각 건물 피뢰침 및 매설 접지 상태 점검
- 동파방지 물 배관 점검 및 보완

2) 자연재해별 기본 이행사항 공지

- 하절기 호우, 태풍, 낙뢰에 대비한 구성원 이행사항 공지
- 동절기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구성원 이행사항 공지

라. 재난 시 대응

- 1)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2) 재난 상황 전파
- 3) 초동 대처

마. 자연재해 시 행동요령

1) 태풍/호우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하여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공사장 근처나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대피한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대피소와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한다
- 전신주, 위험한 담장 부근에 접근하지 않는다
- 창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들을 미리 제거한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된 경우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 퇴실 전에 창문과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한다.
- 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낮은 지대에 가지 않는다.

- 대피할 때에는 가스, 수도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정전을 대비하여 손전등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과 대피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밑으로 대피하지 않는다.
-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 붕괴의 우려가 있는 노후건물에 접근하지 않는다.
-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한다.

2) 낙뢰

○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건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

○ 야외 활동 시 낙뢰 등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져서 대피하며, 자세를 낮추고 금속물질은 버린다.

○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텔레비전이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을 조작하지 않는다.

○ 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높은 곳은 위험하므로 낙뢰 발생 시 신속히 낮은 지대로 이동한다.

○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신주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안에 머문다.

※ 낙뢰를 맞았을 때 응급조치

○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핀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연락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안정시킨다.

○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119에 연락하고 피해자를 안정시킨다.

3) 대설/한파

○ 퇴근 시 사무실의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한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가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손가락, 발가락, 귀,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의심해야 하며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 갑작스런 기온 강화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쪼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된다.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더 소비 되므로 운동 강도는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이뇨·발한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삼가야 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해야 한다.
- ※ 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
-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로 재난문자 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한다.
-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 차량 히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 둔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한다.
- 잠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자되 한 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는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준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을 피하여야 한다.
- 만약 고립되었다면 구조요원이나 항공기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놓고, 야간의 경우에는 실내등을 켜 놓는 등 식별이 쉽도록 한다.

9. 황사/미세먼지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처 학생지원 처장(299-3340)
-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299-3499)

나. 사전 대책

1). 황사/미세먼지 대비 사전교육

-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자료 메일 발송
- 건강관리실 게시판에 자료 게시 및 매뉴얼 비치
- 황사/미세먼지 대응 생활수칙 게시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관련 자료 게시
-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황사발생 국민행동요령」을 기초로 대처방법 교육 및 홍보

2) 교내 방역 및 위생관리

- 학교 실내외 방역 등 청소를 통한 먼지제거 및 방역
- 황사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접종
- 교내식당 식품위생 관리 요청
- 황사 비상대책반 조직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확립

3) 재난 시 대응

-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 기상청의 황사·미세먼지 상황 발령 공지
 - 홈페이지, e-mail, 문자를 통한 신속·정확한 공지
- 손 씻기, 황사 마스크 활용 방법 교육 및 홍보
- 야외활동 및 건물 밖 수업활동 자제 등 황사로 인한 건강보호 홍보

4) 황사/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구분	황 사 강 도	국 민 행 동 요 령
약한 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mu\text{g}/\text{m}^3$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방진마스크 사용 2.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3.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4.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강한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mu\text{g}/\text{m}^3$ 정도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실외활동 금지,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방진마스크* 사용 2.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3.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4.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5. 외출 시 기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 유지
매우강한황사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 예상될 때	1.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금지 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3.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4.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5.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긴 소매 의복, 보호안경을 착용함

5) 황사/미세먼지 발생 확인 및 통보

-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 확인
-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www.kma.go.kr)
 - 기상예보 및 특보안내: ☎ 전국 국번 없이 131(기상상담전화)

다. 황사/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

가) 황사/미세먼지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 ○ 귀가 후 손발을 세척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 사용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 실내외 청소로 신속하게 황사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수업은 실내학습활동으로 대체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 실외로 통하는 창문 및 출입문을 닫고 외부공기와의 접촉 차단 ○ 실내외 청소로 황사를 신속하게 제거 ○ 학교 급식위생 철저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교육 ○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

10. 폭염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299-3499)

나. 사전 대책

1) 폭염 대비 사전교육

- 폭염과 건강관련 교육자료 홈페이지 게시
-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관련 교육자료 게시
- 냉방전력부하증가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여 전력사항 사전 점검
- 폭염 대비 교육 · 홍보 실시
- 폭염대비 하절기 냉난방 장비 사전점검 유지보수
- 폭염 대응조치 상황 홍보 및 행동요령 교육

2) 재난 시 대응

- 폭염 상황 및 피해 발생 상황의 신속한 공지
- 폭염 상황 신속 공지
- 폭염특보 발표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관련 공지

- 폭염대응조치 상황 신속 전파 및 대응
- 폭염주의보 및 경보 시 냉난방 장비 풀가동
- 폭염취약계층 휴식 유도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 및 권고
- 폭염 주의보 경보발령 시 냉방시설 최대 부하 가동
- 폭염특보 발령기준
- 주의보: 6~9월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6~9월 일 최고기온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3) 폭염 시 대응요령

가) 폭염 대응 요령

- 낮 12시 ~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한다.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 스포츠음료, 과일 주스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 준다.
- 커튼이나 천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하고, 하루 동안 여러 번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 준다.
- 평소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샐러드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한다.
- 혈령하고 밝은 색깔의 면 옷을 입는다.
- 독거노인, 아픈 사람 또는 폭염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체크하여 도움을 준다.
- 폭염 관련 건강영향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한다.

※ 유의사항

- 낮 12시 ~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을 자제한다.
- 가스레인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한다.
- 어둡고 두껍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않는다.
- 오랜 시간 동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
-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는다.

11. 식중독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299-3499)

나. 사전 대책

1) 식재료 안전성 점검

- 식재료 검수 시 식재료의 상태 확인

- 부패 및 보관상태, 유통기한 확인
- 생채소류/과일류 등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고 철저히 보관
- 음식은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제공
 - 육류나 냉동식품은 중심온도가 74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 식재료 변질이 의심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량 등을 체크 후 선 폐기(조리된 음식 포함) 후 사후 보고

2) 위생. 안점 점검

-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조리하기 전 손을 비누칠하여 20초 이상 흐르는 물로 세척
 - 위생관념을 습관화하고 몸과 손, 발을 청결히 하며 조리중에 기침, 재채기, 콧물, 머리 카락, 먼지 등이 음식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조리자는 손톱을 짧게 하고 반지나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고 음식물 취급 전에 반드시 손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조리
- 조리원의 몸이 안 좋은 경우 (설사, 구토 등) 보고
 - 조리종사자가 진물, 피부 발진, 칼에 베인 상처가 있으면 조리 삼가
- 음식 조리 중 재료간의 교차오염이 없도록 조리
 - 칼, 도마는 식품별(가공식품, 육류, 생선, 채소, 완제품용등) 구분하여 사용

3) 급식시설, 설비시설 위생관리

- 사용한 기구, 기계의 청결을 항상 유지
 - 숟가락, 젓가락, 행주, 도마, 칼 등은 주기적으로 열탕 소독 실시
- 트렌치 및 바닥, 해충 등 주위환경 위생에 신경
 - 주방의 상하수도 배관, 쓰레기통 주위, 주방의 더러운 부분, 더러운 부엌용기 등을 모두 깨끗이 씻고 소독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
 - 파리, 바퀴벌레, 쥐 등이 식품이 있는 곳에 출입하지 않도록 방충, 방서시설이 확충
 - 독극물, 화학물질 등을 주방이나 주방 가까운 곳에 보관 금지
 - 주방의 적절한 위치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조리시의 냄새 등, 주방내의 환기에 유념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제공
 -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필터교환 및 내부라인 청소

4) 보존식 관리 철저

-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소독된 기구에 담아 냉동보관(영하 18도)하여 144시간 보관

5) 급식 관련자 위생교육 강화

- 조리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취급자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 1종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B형간염-전염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

- 영양사, 조리사 위생·안전 교육 실시
- 급식 조리종사자 위생·안전 교육(월 1회 이상)

다. 재난 시 대응

-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
- 영양사는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 및 건강관리실에 보고
- 보존식 역학조사 실시 및 협조
 - 보존식 적정보관 관리(-18°C이하에서 144시간)
- 급식시설 및 급식 기기 살균 소독으로 급식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라. 사후 대책

- 대책위원회 구성
-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신속한 보고
- 원인조사
- 식중독 발생현황 및 일일상황조사
- 치료·보상협의, 급식 정상화 방안 등 대책 강구

12. 감염병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처 건강관리실(299-3499)

나. 사전 대책 (감염병 유행 대비 조치사항)

1) 감염병 예방 교육

- 일반적 감염병 예방수칙 및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공지
- 손 씻기 및 개인위생지도 강화 교육
 - 올바른 손 씻기 및 개인위생 관련 예방교육 자료 공지
 - 1일 8회 30초간 손 씻기(1830운동) 지속 홍보
- 교육자료: 질병관리청, 교육부 교육자료 활용
- 교육방법: 학교 홈페이지 게시, e-mail, 문자발송

2) 질병증상에 대한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

-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전염병의 증상을 확인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해 조사 및 신고
- 조사내용: 해당질환(증상)으로 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의 수, 조사기간 내 전체 결석자
- 신고기관: 화성시 보건소

3)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개인위생 교육 시행

- 평소 손 씻기 생활화, 기침예절준수 등 개인위생 교육을 대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

○단체메일, SM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인위생 교육 및 전염성 질환의 예방법,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을 홍보

4) 학생 및 교직원의 집단 활동 시 필요한 조치 시행

○전염성질환 유행지역 여행자와 그 접촉자의 경우, 의심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질환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거주지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홍보

5)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예방 처치

- 대상: 교환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등
- 내용: 출국지역 유행 감염성 질환 관련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투약 등의 예방처치 증상 발현 시 대응법 교육
- 교육자료: 질병관리청, 교육부 교육자료 활용

6) 해외연수(여행, 출장) 등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강화

○전염성 질환 발생국가로의 방문이 예상되는 방학 등의 기간에는 사전에 메일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감염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7) 전염성 질환 대유행 등에 철저히 대비

- 휴업 또는 휴교 조치로 인한 수업차질 발생관련 대비: 교무처 협조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각종 방역 활동 협조체계 강화 : 화성시보건소 및 학생지원처, 총무처, 관련부서 협조
- 등교중지, 휴교, 휴업 등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대책 강구 : 교무처, 학생지원처, 관련부서 협조

다. 사후 대책 (전염병 유행 시 조치사항)

1) 전염성 질환자 발생 시 신고(보고)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 받은 경우, 교내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및 관련기관에 신고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내 환자발생 등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자와 밀접접촉이 발생한 경우도 즉시 교내 주관부서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2) 학생 및 교직원 중 환자발생 시 격리조치

○학생 및 교직원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등교중지, 휴강 등 즉각 격리조치
○진료의사의 소견, 보건당국의 조치안내에 따라 해당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중지, 임시휴업, 휴강 및 휴교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
○기간: 전염성질환에 따라 보건당국에서 제시하는 기간 동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 및 관할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

3) 단체활동 및 단체생활자 대상 발생예방 및 조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집단모임(MT, 부서워크샵, 동호회모임 등) 자제하도록 통보
- 전염병 대유행시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단체활동을 하지 않도록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책임 하에 다음사항을 사전에 교육하고 실시
 -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체계 구축 및 대비책 마련
 - 환자발생 시 진료, 격리, 환자관리에 대한 내용 사전교육
- 기숙사 환자검진
 - 기숙사 전염성질환의 증상 유무확인 및 잠복기 해당 시 입사 불가함을 통보
 -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던 경우 증상소실 및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경우 입사가능
 - 관리자선정: 의심환자 조기발견, 신속 격리할 수 있도록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철저하게 대비
 - 입사 중 확진환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귀가조치하며, 방역 및 접촉자 관리 실시

4) 사후 예방교육 및 홍보

- 휴강, 휴업 중인 경우에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전염성질환의 주의사항, 감염예방수칙, 개인위생 수칙 등을 적극 홍보

5) 확진되어 격리중인 환자의 경우 개별적 확인관리 실시

6) 교내 결핵환자 발생 시 대책

- 관할 보건소에 환자 발생 신고
- 등교 및 출근 제한
 - 학생 및 교직원 중 '전염성 결핵 환자' 발생 시 전염성 상실 시 까지 등교 및 출근 제한 (근거: 학교보건법 제 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2조)
- 비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 등교 및 출근제한 필요 없음
- 등교 및 출근 제한의 해제- 도말 양성 환자 :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도말 검사에서 음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 도말 음성, 배양 양성 환자
- 결핵제 2주 이상 투여 중인 상황에서 배양 양성 확인된 경우 추가로 출근 또는 등교 제한 필요 없음
- 결핵제 투여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 된 경우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최소 2주 이상 항결핵제 투약 후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 등교 및 출근제한 해제
- 역학조사 관련 대응
 - 교내 결핵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2주 이상의 심한 기침, 가래가 있는 결핵 의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소 방문토록 지도
 - 역학조사 해당 범위의 학생 및 교직원 명단을 보건소 또는 중앙결핵역학조사팀에 3일 이내제공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조)
 - 역학조사 적극협조 :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시 복약확인 협조, 접촉자 조사 및 후속 조치 협조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라. 감염병 유행 시 대응

1) 감염병 유행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판단기준	주요 조치사항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의 신종 전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정보 수집·전파 대응태세 점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지역별 재출현 전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전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전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지침시달 전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재출현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수인성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 전염병 예방 및 감시강화 지침 일제 시달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금지 방역기관 등 협의 하에 휴교/휴업 결정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국내 신종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재출현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수인성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합동대응, 대국민담화 발표 등 전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전파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각종 단체활동 일제 금지

2) 감염병 관련 교내 방역

- 감염병 업무 담당 필수 인력 지정 및 방역 물품 비축
 - 감염병 대응 필수 인력 : 감염병 대책반 담당자, 주관부서, 방역 담당자 등
 - 방역물품 예시 : 비접촉 체온계, 의료용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기, 방역물품 등
- 방역(소독)실시

세부지침	적용범위
정기소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
임시소독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유행 시 해당 공간에 대해 실시
수시소독	평상 시 학내 공간, 장비, 비품 등 수시소독 실시

-방역 소독의 분류

가) 해외여행 전 예방 접종

- 황열: 황열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

역형성 기초 접종 2회와 추가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장티푸스 :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하다.

○일본뇌염: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한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한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광견병: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한다.

○A형간염: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인해 전파되므로 여행 중에는 끓인 물, 익힌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A형간염 예방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 한 달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B형간염: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 :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1주 전부터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예방약을 복용하여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후 2달 이내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조기 진단이 어렵고 어떤 감염병 보다 치사율이 높아 기숙사생, 군대 신병, 수막구균감염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파상풍: 토양이나 동물분변의 파상풍균이 피부나 점막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봉사 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이 많은 해외여행 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파상풍 예방접종은 10년마다 1회 접종해야 하므로 최근 예방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해야 한다

13. 성폭력

가. 주관부서/담당자

○인권성평등센터 센터장(299-3520)

나. 사전 대책

1) 폭력예방교육

○교직원 대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학생 대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폭력예방교육 소책자 배포

2) 폭력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영상물 및 읽기자료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응법) 배포

3) 구성원 기본 대응사항 숙지

-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교내 양성평등위원회 이용방법 및 위치

다. 재난 시 대응

1) 상담, 사건 신고접수 및 처리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는 방문, 전화, e-메일로 상시 상담 신청
-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와 상담 후 사건 신고접수(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 모두 신고 가능하지만, 제 3자가 신고 시에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2) 보고체계에 따라 사안 보고

라. 사후 대책

1) 피해 당사자(신고인)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사후 모니터링

- 피신고인이 피해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 피신고인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또는 징계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14. 폭행사과

가. 주관부서/담당자

- 인권성평등센터 센터장(299-3520)
- 학생상담센터 (299-3338, 299-3346, 299-3347)

나. 사전대책

- 순찰체계 확립
- 외부출입자 중 주취자 및 거동수상자 신고체계 수립
-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초동대처 매뉴얼 수립 및 공지
- 경비실 위치 공지
- 화장실 비상벨/세콤 가로등 비상벨 점검 및 공지

다. 폭행사과 시 행동요령

1) 주변에 주취자/거동수상자 발견 시

-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공유하고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합니다.
- 혼자인 경우 주취자나 거동수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양성평등센터 전화번호로 신고합니다.
- 주취자나 거동수상자 주변에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나 가로등 비상벨을 사용합니다.

- 2) 위급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화장실이 가까운 경우는 화장실 부스로 피신하여 비상벨을 누릅니다. 정문경비실에서 작동된 위치를 파악하고 보안요원 및 시스템경비 관리업체(에스원)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 경비실에서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고, 통화(299-3400)가 가능합니다.

- 3) 주변의 위급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 “무슨 일 있어요” 등 큰소리로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 경비실에 전화나 비상벨로 상황을 알리고, 경비실 근무자가 출동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합니다.
 - 나중을 대비하여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15.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팀 담당(299-3315)
- 교무팀 담당(299-3323)
- 국제교류원(299-3509, 299-3511)

나. 목 적

- 1)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난 및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3)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다. 주요내용

- 1)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운영시기: 매학기 초(3월, 9월) 오리엔테이션과 병행 실시
 - 장소: 강의실
 - 대상: 외국인 유학생
 - 교육내용
 - 취사실 사용시 가스사용 관련 안전 교육
 - 실내 전기기기 사용시 안전 교육
 - 기타 재난 및 일상생활 관련 안전 교육
 - 가스 또는 화재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 2)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훈련 실시
 - 운영시기: 년 2회(학기별 1회)
 - 장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
 - 대상 : 외국인 유학생

- 교육내용
 - 화재대비 및 소화기 사용 훈련
 - 지진 및 태풍 등 재난 대비 훈련
 - 생활안전 훈련
 - 심폐소생술 훈련

- 3)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조직도

16 학생 행사

가. 주관부서/담당자

-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 담당(299-3315)
- 교무처 교무팀 담당(299-3323)

나. 사전 대책

1) 교내 행사

- 행사계획표 점검
- 행사장 점검
- 안전시설물 점검
-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점검
- 의료지원팀 배치
- 사고발생 시 대응매뉴얼 수립

2) 교외 행사

- 행사계획표 점검
- 행사장/숙박시설 점검
 - 최근 1년 이내의 지자체 시설 안전점검 결과 확인
 -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점검 결과 확인
- 행사장/숙박시설 보험가입 여부 확인
-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종합보험 가입 여부
 - 계약조건에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인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 적시
 - 운전자의 적격 여부
 - 당일차량이 계약차량인지 확인
- 참가 학생 보험가입
 - 공식행사인 경우 학생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캠퍼스 보험 혜택
 - 공식행사가 아닌 경우 여행자보험 등 가입
-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 음주, 폭행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 행사장 도착 시 행사장, 숙소의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교육
- 사고발생시 신고 요령 교육

○사전 답사

- 보험가입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현장 지도

- 담당부서
- 지도교수

다. 사후 대책

1) 현장 확인 및 대처

- 학생 피해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 응급처치
- 소방서, 경찰서 등 신고

2) 재난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3) 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보험청구

라. 교외 행사시 점검사항

1)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내용	확인
차량	차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보험가입 여부 ○ 정기검사필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 	
	차량상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 확인 ○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 확인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학생	안전교육 비상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벨트 착용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 확인 	
구급약	약품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 파악 	
연락망	비상연락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인 ○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2)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 행사 당일 적정 수용인원 확인 ○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 확인 ○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 설치 확인 ○ 지자체 안전점검 여부 ○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 확보 ○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 	
도착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 ○ 필요한 구급약품 준비 	

3) 화재 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 배치 및 정상 작동 ○ 소화기의 위치 확인, 사용법 ○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 ○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 	
도착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 안내 ○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 안내 	

17. 사이버 안전사고

가. 주관부서/담당자

- 총무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299-3366)
- 정보전산원 정보보안 담당 (299-3388)

나. 사전 대책

1)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 강화

-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노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점검 강화
- 위협관리시스템을 통한 PC 및 주요 서버에 대한 침해정보 수집 및 분석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침해위협 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공유 체계 구축

2)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사이버공격 대응체계(IPS, 방화벽 등) 구축

- 교육부 사이버안전지원시스템 SMS, 메일 등을 활용한 사이버 침해사고 전파·공유 및 실시간 보안 관제연락망체계구축

-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구성원 PC 보안 강화를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및 업데이트
-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정보보안 업무 관리 강화

- 정보보안 내부교육 및 부서점검 실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

다. 사후 대책

1) 원인조사

- 자체 침해 사고 대응반에 의한 조사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전파
- 경찰사이버수사대 수사 의뢰/조사 (필요시)

2) 사고보고

- 정보전산원: 정보시스템 피해 상황 파악 및 총괄보고
- 해당 부서: 부서별 시스템 피해 상황 파악

3) 피해복구

- 정보전산원/유관부서 협의 시행

라. 사이버 안전사고 대응요령

1) 사이버 안전사고 예방요령

가)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철저

-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가르쳐주지도 말고 남의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적은 포스트잇과 같은 쪽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지 말고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 보낸 사람이 불분명한 메일 개봉 금지

- 보낸 사람이 불분명한 메일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한다.

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용 8자리 이상

- 사용하는 컴퓨터나 웹상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혼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한다.
-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 가지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미 남의 컴퓨터와 다름이 없다.

라) 중요한 문서는 암호를 설정하고 백업 생활화

-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별도의 하드디스크나 USB와 같은 보조 장치에 반드시 백업을 하여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한다.

- 백업 받아놓지 않은 자료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므로 주의 한다.

마) 개인정보 자료 완전 소각

- 불필요하거나 폐기 무방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택배운송장 등은 완전 소각한다.

바) 웹상에 개인정보 게시 금물

- 미니홈피, 블로그, 동창회, 동호회 홈페이지 등 웹상에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사) 명의도용확인서비스 이용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 및 도용 시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확인서비스 또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한다.

아) 신뢰할 수 있는 파일만 설치

○웹서핑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파일만 설치한다.

자)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시 주의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초대 또는 친구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URL이나 첨부파일을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다.

차) 윈도우 및 백신 자동 업데이트 생활화

○윈도우 및 백신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2) 사이버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

가) PC에서 랜선 분리하여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다.

18. 국가비상사태

가. 주관부서/담당자

○총무처 총무팀 담당(299-3370)

나. 사전 대책

1) 총무 자체계획 수립 및 전파

○전시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

○전시 행정계획

○전시 대학기관 소산 및 이동계획

○비상소집 및 근무계획

○비상지출 및 파기계획

○전시 민방위대 운영계획

○전시 상황실 설치운영 및 보고

○통신계획

2) 전시행동요령 안내

○전시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민방위대원 편성 및 개인 임무

○대피소 및 대피로 위치

○교내 상황실/군/행정관서 신고번호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기본교육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4) 민방위 장비/물자 유지 관리

- 민방위 물자(방독면 등) 구매 비치
- 민방위 물자 보관상태 자체 점검(년 1회 이상)
- 대피소 지정 및 자체 점검(년 1회 이상)

다. 사후대책

1) 사고보고

- 재난 대응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인명 피해 : 인명피해 상황 파악 - 총무처, 학생지원처, 주관부서
- 시설물 피해상황 - 총무처
- 기자재 및 집기비품 피해상황 - 총무처

2) 재난 복구

- 총무처에서 유관부서와 협의 시행

3) 보험 청구

- 총무처에서 유관부서와 협의 시행

라. 비상사태 대응

1)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2) 비상소집 및 근무

3) 비상사태(1, 2, 3종)에 따른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에 따른 비상근무

4) 전시 학교운영

5) 전시 민방위대 운영

마. 전시 행동요령

1) 일반 행동요령

- 총장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다.
- 등교 여부는 학교의 지시를 따른다.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학교, 지역의 통·반장의 지시에 따른다.
-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바. 경보식별 및 행동요령

1) 경보의 종류

○경계경보: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앰프 등으로 경보방송을 한다.

○공습경보: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3초 간격으로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 TV, 앰프 등으로 경보방송을 한다.

○경계경보 행동요령

- 경보가 울리면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대피 준비를 한다.

○지정된 출입구와 대피장소를 확인한다.

2)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지하대피소 또는 안전한 곳으로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 신속히,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한다.

○신체장애자나 허약자를 먼저 대피장소로 대피시킨다.

○대피한 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민방위본부의 지시를 따른다.

사. 화생방 방호요령

1) 화생방전이란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전염물질 또는 해충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방사능물질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전쟁행태를 말한다.

2) 화학전은 독성이 강하고 공기보다 다소 무거운 가스로 공기를 오염시켜 일시에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며 큰 혼란을 일으킨다.

3) 화생방 경계경보 시 행동요령

○경보가 발령되면 신체장애학생 및 허약학생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방독면,보호의 등 보호 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고 대피 준비를 한다.

○대피한 장소는 외부의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4) 화생방 경보 시 행동요령

○옷을 완전히 입어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 장비가 없으면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비옷으로 몸을 가린 후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빨리 벗어나되 바람을 등지고 피해서는 안된다.

○오염된 학생은 옷을 갈아입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 후 피부는 비눗물로 닦아주어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한 후 학교 근처 병원(교내에서는 건강관리실)에 연락한다.

아. 신고요령 숙지

1) 신고해야 할 대상

○적군, 무장공비, 간첩, 거동수상자

○불발탄, 지뢰 등의 폭발물

○적의 선전물 또는 불온문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말은 일을 게을리 하도록 선전하는 자

○살인·방화 등의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2) 신고방법

○교내는 총무처 총무팀 담당, 총무처 관리팀 담당, 경찰관서, 군부대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111 또는 112에 신고한다.

○이장, 통·반장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에게 신고한다.